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00호 (2013-30) 발행일 : 2013. 07. 2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제도는 200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주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음.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서민금융제도들은 대상자 및 대출상품의 종류, 제도간 연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복지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금융지원제도, 부채상환방식의 다양화, 서민금융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현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향 수립이 필요함



김태완
기초보장연구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2000년대 들어 신용불량자를 돕거나 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이라는 표현이 금융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서민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금융부문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주요한 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금융이용 실태와 분석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서민금융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들과 낮은 신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표현하고 있음(손상호 외, 2013)
- 서민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저소득층과 낮은 신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적 측면에서는 낮은 신용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이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에 대한 논의는 금융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방향에 있어서도 재정안정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음¹⁾

- 그러나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인 저소득층의 경우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금융이용의 목적과 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채무조정 또는 대출이자율의 조정과 같은 금융적인 측면만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고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저소득층 대상 서민금융제도들과 현정부에서 도입된 행복기금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부채와 금융이용실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사회보장측면에서 저소득층 또는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이 어떻게 갖추어져 가야하는지를 살펴보고,

○ 또한 향후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 중의 하나로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함

2. 저소득층 금융지원 제도와 저소득층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저소득층 금융제도의 현황 및 한계

■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관심은 2003년 신용위기가 대두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음

○ 2000년대 초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과도한 신용대출의 증가로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면서 이들의 부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한 지원방안제도를 강구함

○ 민간에서는 새롭게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돕기 위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관련 사업을 수행함

○ 마이크로 크레딧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사업으로서 미소금융의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제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창업 및 생활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제도는 시장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장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이 본인들의 신용과 자산을 통해 주거, 생활자금 등을 대출받게 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다는 점에서 시장을 통한 금융기관의 이용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불리하다 할 수 있음

1) 사회보장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의 하나로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저소득층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제도인 희망키움통장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와 지면서 자활사업 참여자나 저소득층들이 모여 이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출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대안금융에 대한 시도들을 들 수 있을 것임

-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두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음²⁾.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형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과 지난 정부에서 도입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들을 들 수 있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주택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전세)주택자금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음
 - 청년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 사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들의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현정부에서는 채무불이행자와 저소득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고 있음
- 지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민간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제도들을 도입하였음
 - 미소금융제도는 2008년 7월에 은행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과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기부한 재원(10년간 2조2천억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생활안정과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제도임
 - 미소금융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서 미소금융 관련 상품들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햇살론은 미소금융제도를 통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이 출연한 재원(5년간 10조원)을 기초로 서민대출 제도를 운영하게 됨
 -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은 창업, 사업 자금 이외에 생계자금을 함께 다루고 있음
- 새희망홀씨제도는 햇살론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민간은행(농협, 수협 및 새마을금고 등)을 기반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 및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음
 - 위 사업들은 지난 정부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들의 탈빈곤과 생활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³⁾
 - 먼저 창업자금 위주의 지원으로 생계지원을 바라는 저소득층의 욕구와 차이를 보이며 저소득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연체율이 높고 대출관리가 어려움
 - 미소금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재무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다른 금융지원, 일자리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손상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서민금융을 시장성 서민금융과 정책성 서민금융으로 구분하고 있음. 시장성 서민금융은 민간금융기관들이 낮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금융으로 주로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제도를 말하고 있음. 반면에 정책성 서민금융은 각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제도'와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성 서민금융'으로 구분하고 있음(손상호, 이재연(2013),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3) 남주하(2013),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금융대토론회, 한국경제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 현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제도 중 하나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지원 및 소득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악순환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⁴⁾

○ 사업은 크게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의 세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재원과 지원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성실부채상환자의 형평성), 제도의 한시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나. 저소득층 금융이용 실태

- 통계청의 가계금융 · 복지조사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 및 금융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계금융 · 복지조사를 통해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규모를 보면,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소득1분위(하위 20%)의 경우 자산은 2011년 10,846만원에서 2012년 9,899만원으로 부채는 2011년 1,445만원에서 2012년에는 982만원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감소함

○ 다른 소득분위의 경우 자산과 소득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기준으로도 소득1분위(하위 20%)의 경우 2011년 자산은 10,846만원, 부채는 4,400만원에서 2012년에는 각각 9,899만원과 3,054만원으로 감소함

- 특히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부채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규모(평균)

(단위: 만원)

구분	전체가구						보유가구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자산액	부채액	순자산	자산액	부채액	순자산	자산액	부채액	순자산	자산액	부채액	순자산
전체	29,765	5,205	24,560	31,495	5,291	26,203	29,765	8,289	21,476	31,495	8,187	23,308
1분위	10,846	1,445	9,401	9,899	982	8,917	10,846	4,400	6,445	9,899	3,054	6,845
2분위	16,130	2,748	13,381	16,619	2,812	13,807	16,130	4,595	11,535	16,619	4,638	11,982
3분위	22,813	3,850	18,963	23,204	3,856	19,348	22,813	5,637	17,177	23,204	5,289	17,915
4분위	33,732	5,953	27,779	33,803	5,620	28,183	33,732	7,879	25,853	33,803	7,349	26,455
5분위	65,281	12,023	53,258	73,941	13,186	60,756	65,281	15,530	49,751	73,941	16,279	57,662

자료: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 일반가구와 비교하기 위해 가구유형에서 저소득층이며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한부모 및 노인 가구들에 대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자산에서는 한부모가구가 17,645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장애인 및 노인가구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부채 규모에서는 한부모가구들이 가장 많은 약 4천만원 수준이고 장애인가구가 3천만원 이었으며, 노인가구가 1,700만원 수준, 조손가구가 가장 적은 1,200만원 수준이었음

○ 이들 가구유형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규모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볼 경우 2분위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소득가구와 더불어 이들 가구유형의 가구들이 자산 및 부채에서 취약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음

4) 최지현(2013)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최지현(2013),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 및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표 2〉 가구유형별 자산 및 부채규모(2012년)

(단위: 만원)

가구유형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액	경상소득
장애인가구	20,196	2,996	17,200	2,621
한부모가구	17,645	4,004	13,641	2,939
노인가구	21,160	1,768	19,392	1,243
조손가구	14,327	1,199	13,128	1,738

자료: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

- 소득분위별로 부채용도를 보면 저소득층은 소득 1분위(하위 20%)에 속한 사람들의 부채용도는 2011년 기타와 사업자금마련에서 2012년에는 거주주택마련, 사업자금마련으로 바뀜
 - 특히 다른 소득분위 계층에 비해 소득이 낮은 점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용도가 2011년 11.7%에서 20.0%로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마련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분위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높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부채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3〉 소득분위별 부채 용도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거주 주택 마련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채 상황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거주 주택 마련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채 상황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전체	30.3	18.0	4.6	3.5	29.0	5.3	9.3	34.8	16.3	5.8	2.5	28.2	5.8	6.6
1분위	16.9	6.4	6.4	4.6	22.0	11.7	32.0	25.1	6.9	6.4	4.3	24.7	20.0	12.7
2분위	26.7	20.5	5.4	3.8	23.1	7.9	12.5	28.3	8.7	7.9	5.7	32.2	9.6	7.6
3분위	36.0	9.4	7.0	7.8	25.1	7.0	7.8	38.1	11.0	8.4	2.7	22.4	9.0	8.4
4분위	32.8	18.9	5.5	3.8	24.9	6.2	8.0	44.2	14.9	6.9	2.3	18.8	5.9	6.9
5분위	29.6	21.3	2.9	1.8	34.5	3.0	6.9	31.7	20.8	4.2	1.6	33.4	3.1	5.2

자료: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 가구유형별로 부채용도를 분석해보면,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마련(40.01%)을 위해, 한부모가구는 사업자금 마련(42.43%), 노인 및 조손가구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위한 부채는 장애인 및 한부모가구는 11%내외, 노인가구는 10% 이내라면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17%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음
 - 만약 가구유형과 소득분위를 함께 분석할 경우 저소득 가구유형의 생활이 취약하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거주주택과 생활비 등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4〉 가구유형별 부채 용도

(단위: %)

가구유형	거주주택 마련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	전·월세보증금마련	부채상황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의료비 마련	기타
장애인가구	40.01	12.81	4.50	2.76	21.96	9.94	1.70	6.32
한부모가구	19.88	11.74	6.25	3.05	42.43	9.42	0.74	6.49
노인가구	22.06	28.36	2.50	3.31	26.76	7.22	1.88	7.92
조손가구	25.45	1.63	1.89	3.36	32.55	16.33	1.33	17.45

자료: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 소득분위별로 부채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채구성은 금융부채가 임대보증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 보유비율에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가구비율은 높지 않음
- 금융부채중에서는 소득1분위(하위 20%)의 경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2012년 기준으로 12.5%와 10.2%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았으며, 신용카드관련 대출가구도 2012년 3.6%에 불과함
 - 특징적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들의 경우 신용카드 대출을 가진 가구의 비중은 적었지만, 대출금에 있어서는 다른 분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 소득분위별 부채 구성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채액	2011년	비율	62.8	32.8	59.8	68.3	75.6	77.4	
		평균	8,289	4,400	4,595	5,637	7,879	15,530	
	2012년	비율	64.6	32.2	60.6	72.9	76.5	81.0	
		평균	8,187	3,054	4,638	5,289	7,349	16,279	
	금융부채	2011년	비율	56.2	27.1	53.8	62.2	69.5	68.5
			평균	6,396	3,849	3,512	4,332	6,035	11,907
2012년		비율	58.5	26.2	55.1	67.9	71.2	72.3	
		평균	6,147	2,410	3,545	3,976	5,505	12,157	
담보대출		2011년	비율	35.5	15.0	28.1	38.8	46.4	49.1
			평균	8,024	3,998	4,734	5,354	7,357	13,876
	2012년	비율	34.3	12.5	28.0	37.8	44.4	48.9	
		평균	8,386	3,099	5,033	5,403	7,027	15,207	
신용대출	2011년	비율	23.2	10.1	21.5	24.2	29.9	30.6	
		평균	2,690	3,832	2,038	2,073	2,182	3,757	
	2012년	비율	23.3	10.2	20.1	26.1	27.9	31.9	
		평균	2,548	1,833	2,156	1,927	2,419	3,644	
신용카드 관련 대출	2011년	비율	7.1	3.6	10.0	9.2	7.0	5.6	
		평균	668	1,119	665	572	493	764	
	2012년	비율	5.9	3.6	7.7	8.8	5.7	3.8	
		평균	798	1,176	795	671	638	976	
임대보증금	2011년	비율	17.0	8.7	11.6	14.8	20.1	29.7	
		평균	9,474	4,605	7,437	7,820	8,726	13,032	
	2012년	비율	16.5	7.9	11.6	13.8	18.8	30.1	
		평균	10,288	4,413	7,384	8,374	9,033	14,624	

주: 1) 위자료는 보유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합에 대한 비율이 차이가 발생(예, 부채액≠금융부채+임대보증금)
 자료: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보면, 2011년 대비 2012년 모든 분위에서 재무적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점유하는 비중이 2011년 279.6%에서 2012년에는 144.4%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자산 대비 부채 역시 2011년 13.3%에서 2012년 9.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재무건전성의 증대는 앞의 표에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채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부채감소 현상이 어떤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표 6〉 소득분위별 재무건전성 (단위: %)

구분	부채/자산		부채/금융자산		금융부채/금융자산		부채/가처분소득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전체	17.5	16.8	75.4	67.4	52.1	45.8	158.5	152.3
1분위	13.3	9.9	72.2	50.8	52.1	32.7	279.6	144.4
2분위	17.0	16.9	79.5	74.4	54.6	51.7	180.1	165.1
3분위	16.9	16.6	68.4	65.1	47.9	45.6	150.6	138.0
4분위	17.6	16.6	76.7	65.1	54.1	45.4	152.3	135.1
5분위	18.4	17.8	76.7	69.4	52.1	46.2	152.1	164.2

자료: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3. 정책방안

- 본 고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부문에서의 지원제도와 실태에 대해 살펴 보았음. 앞에서 검토 된 것들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사회복지차원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첫 번째 금융이라는 상업적 목적과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사회복지적 측면을 함께 접목한 형태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민형 금융기관(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들은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주로 일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즉 순수하게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상업적 금융으로서의 형태를 많이 지니고 있어 우선적으로 상업적 이익 추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할 수 있음
 - 2012년 말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있음. 하지만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분야가 금융분야라 할 수 있음⁵⁾
 -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고려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상업적 목적에서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협동조합이 지니고 있는 연대와 사회통합의 정신을 고려하여 조합원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임
 - 실태에서도 저소득층의 최근 생활비에 대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비, 의료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소액대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반인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일반 금융체계를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이원적 구조의 설립이 가능할 것임⁶⁾

5) 협동조합 기본법 94조는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사업을 위한제한으로 94조 1항 후미에서는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즉 협동조합들이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소액대출의 재원도 제한을 두고 있음(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15조와 16조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6) 위와 같은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점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형성이 가능함. 일반 금융기관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달리 조합원 출자금을 통한 재원의 조달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상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동 기금의 형성은 출자금이 소액이라 기금을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금융적 지원과 동시에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지원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에 대한 소개와 연계가 가능할 것임

■ 두 번째로 서민금융을 이용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상환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서민금융의 대출금에 대해 대출기간을 길게 해주는 상환유예나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주로 삼고 있음

○ 서민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액이 소액(표 1, 평균 982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위주의 상환방법에서 현물을 통한 상환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용불량자나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혹은 청년실업층)은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갚고자 해도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재정일자리 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일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와 금융제도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민금융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함

○ 현재는 미소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과거 금융기관 재직경험을 기초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어 책임감 및 소속감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또한 청장년들이 이들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어도 낮은 보수는 이들의 진입을 막게 됨

○ 우선적으로 미소금융제도의 운영자 및 그 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서민금융제도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싶어 하는 금융기관 종사 경험자 및 청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저소득층 또는 서민들의 부족한 금융지식을 보완하고 자산 및 재무관리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평가와 장기적 발전계획이 필요함. 지난 정부들에서는 신용회복제도, 미소금융 등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신용회복과 가계부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져 왔음

○ 하지만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들은 많이 있음에도 이들 제도들의 효과와 제도들 간의 연계, 금융의 한 축과 복지제도로서의 두가지 역할 수행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 아닌 집권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생김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발전적 지원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현재의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제도 및 금융성 복지지원 제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집필자 | 김태완 (기초보장연구센터 연구위원) 문의 | 02-380-8233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